

계룡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 호
의결년월일	2005. 7. . (제 17 회)

제출일자	2005. 6. .
제 출 자	계 룡 시 장

1. 개정이유

- 2005. 4. 19자 조직개편에 따라 계룡시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 조례(2004. 12. 20, 조례 제128호)를 市의 조직에 적합하게 개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안전관리자문단 간사 및 서기(안 제12조)
 - “건설과장”을 “재난안전관리과장”으로, “하천방재담당”을 “재난관리담당”으로 개정코자 함.

3. 참고자료

- 신·구조문대비표

계룡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계룡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중 “건설과장”을 “재난안전관리과장”으로 하고, “하천방재담당”을 “재난관리담당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 (간사와 서기)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, 간사는 <u>건설과장</u> 이 되고 서기는 <u>하천방재담당</u> 이 된다.	제12조 (간사와 서기) ----- ----- -----, ----- <u>재난안전관리과장</u> 이 되고 서기는 <u>재난관리담당</u> 이 된다.